미성년
 미성년
 미수견인
 ②후견감독인
 경 질 신 고 서

(년 월 일)

※ 신고서 작성 시 아래의 작성 ▮ 을 참고하고, 선택항목에는 '영표 (○)'로 표시하기 바랍니다.

수 에 대한법률구조공단

	(1	-	包	t	크 丿		· ·	_ ,		
1	성 명	한글	(성)	/ (명)	한자	(성) /(명])	주민등록	·번호	-
미성	등록기준지							출생연	월 일	
년자	주 소								1	
② 후임 후견인	성 명	한글	(성)	/ (명)	한자	(성) /(명])	주민등록	번호	_
	등록기준지							출생연	월 일	
	주 소									
③ 후임 후견	성 명	한글	(성)	/ (명)	한자	(성) /(명])	주민등록	·번호	-
	등록기준지							출생연	월 일	
감독인	주 소									
④전임후견인 후견감독인 성명										
5	성 명	(성) /	(명)			@ :	또는 서명	전 3 이메 ⁹	화 일	
신고인	자 격	[]후	임후	견인 [길후임	후견감	독인			
⑥경질일자 및 원인					년	월	일			
⑦취임일자 및 원인					년	월	일			
⑧재 판 확 정 일 자					년	월	일	법원명		
⑨기 타 사 항						<u> </u>				
⑩제출인 성명								주민등록	번호	_

작 성 방 법

- ※ 등록기준지: 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국적을 기재합니다.
- ※ 주민등록번호: 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(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)를 기재합니다.
- ①②③란: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때에는 출생연월일 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.
- ⑥란: 경질일자 및 원인란에는 2013. 7. 17. 후견인 사망, 2013. 7. 17. 후견감독인 사망, 2013. 7. 17. 후견인 사임, 2013. 7. 17. 후견인변경재 판확정 등으로 기재합니다.
- ⑦란:취임일자 및 원인란에는 후임후견인·후견감독인의 취임일자 및 원인을 기재합니다. 후임후견인·후견감독인의 선임심판일 또는 변경 재판확정일이 취임일입니다.
- ⑨란: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.
- ⑩란: 제출인(신고인이 작성한 신고서를 신고인이 아닌 사람이 제출할 경우만 기재)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.[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]

첨 부 서 류

- 1. 미성년후견인경질신고
 - -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한 경우 : 재판서 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
 - -미성년후견인을 변경한 경우 : 재판서 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
- 2. 미성년후견감독인경질신고
 - -미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한 경우: 재판서 등본 1부
 - -미성년후견감독인을 변경한 경우 : 재판서 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
- ※ 아래 3항은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첨부를 생략합니다.
- 3.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.
- 4. 신분확인[가족관계등록예규 제443호에 의함]
 -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: 신분증명서
 -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: 제출인의 신분증명서
 - 우편제출의 경우 :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
- **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도용하여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,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.